

「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 도문농요전수관은 2014년 6월에 건물을 준공하고, 2015년 6월에 수탁자로 선정된 속초문화원에서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전수관 사용료 감면근거가 불명확하여 위탁 운영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기에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감면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합리적인 전수관 운영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원활한 활동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규칙제정 목적 (안 제1조)
 - 도문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사용료의 감면(안 제2조)

- 조례 제13조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명시화

○ 기타 사항(안 제3조)

-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속초시와 수탁자간 합의하여 정함.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24826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469-6)

속초시청 교육문화체육과 문화재담당자

(전화 : 033-639-2958, FAX : 033-639-234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교육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033-639-2226, 29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료의 감면) 「속초시 도문농요전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제3호에 따른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국·공립 기관과 각급 학교의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수관 사용. 다만, 기관 및 학교의 소재지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에 활동 근거지를 두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

제3조(기타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전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와 수탁자간의 합의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